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129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박노영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390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8.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12. 11. 접수 제5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C’ 부분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2. 31.자 기준으로 한 A의 재무제표상 그 자산총액은 3,549,907,623원이고, 그 부채총액은 2,692,562,973원으로 857,344,650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2018년도까지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542,176,318원이고, 매입액은 296,808,229원으로 매출이익이 245,368,089원인 사정 등에 비추어,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A의 재무제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11. 29.’ 무렵이 아닌 2017. 12. 31.자 기준의 재무제표임과 아울러,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인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하면서 고려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및 제1심 법원의 평택세무서, 안성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른 A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현황 등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보태어 볼 때, 을다 제28 내지 4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A의 2017. 12. 31.자 기준 재무제표상의 주요 외상매출금 채권을 합하면 755,039,243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A는 539,485,274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A의 위 각 외상매출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A가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위 각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 각 외상매출금 채권 전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위 각 외상매출금 채권 중 일부를 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A의 일부 외상매출금 채권의 액수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A의 소극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A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의 자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불한 매매대금은 A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 할 것인 점,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원고 등에 대한 여러 채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환계획 등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 자력을 회복향상시키거나 A의 사업 정상화 내지 그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및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라고 할 것인 사정과 함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가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그 과정,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A의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의 채무 41,329,533원을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2. 2. 4.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4.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수, 판사 박혜선, 판사 임영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경광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42.5㎡ 끝.

